

[첨부2]

(주)영원무역 이사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권한】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제2장 구 성

제4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사외이사 및 비상근이사 포함)으로 구성한다.

제5조 【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회장으로 한다.

② 대표이사 회장의 유고나 부재시에는 정관 제34조의1 제2항에서 정한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회 의

제6조 【종류】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매분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7조 【소집권자】 ①이사회는 대표이사 회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대표이사 회장의 유고나 부재시에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이사는 대표이사 회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이사 회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 【소집절차】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각 이사에 대하여 이사회소집통지서를 모사전송, 전보,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가 해외에 상주하면서 근무하는 경우나 기타 각 이사가 서면동의에 의하여 소집통지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에는 위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이사회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소집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9조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회 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사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부의사항】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의 소집

나. 영업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의 승인

다. 정관의 변경

라. 자본의 감소 또는 주식의 소각

마.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바.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

사.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을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아.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기타 이사의 보수

자.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

차.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카. 현금·주식 배당의 결정

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파.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의 보고

하. 기타 주주총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앞 사전 부의할 사항

2. 경영에 관한 사항

가.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나. 신규사업진출

다. 신제품의 개발 또는 신기술의 도입

라. 중요 자금집행 및 예산운용 기타 결산

마. 일정 범위(회사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3) 내에서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바. 주식매수선택권부여의 취소

사.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와 위원회의 위원 선임 및 해임

아.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자. 중요 인사정책 (채용 및 훈련포함) 및 상벌심의

- 차. 급여체계, 상여 및 후생제도
- 카. 기본 조직의 제정 및 폐지와 중요한 사규의 제정 및 폐지
- 타.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 파.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 하.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3. 재무에 관한 사항

- 가. 투자에 관한 사항
- 나. 중요한 계약의 체결
- 다. 중요한 자산의 취득
- 라. 중요시설의 신설 및 폐지
- 마. 신주의 발행 또는 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포함)의 발행
- 바. 준비금의 자본전입
- 사. 다액의 자금차입이나 보증행위
- 아.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기타 담보제공행위
- 자.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4. 이사에 관한 사항

- 가.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나.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의 선임 및 해임
- 다. 공동대표이사의 결정
- 라.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
- 마. 이사의 경업(競業) 및 동종업종 타 회사 임원의 겸임 승인

5. 기타

- 가. 중요한 소송의 제기 및 응소
- 나. 법령 및 정관에서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사항
- 다. 기타 이사회 및 대표이사 회장이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이사 또는 위원회의 위원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2.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3.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11조 【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단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2조 【감사 및 관계자의 출석】 ① 삭제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자를 이사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업무집행을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이사의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회의장소】 이사회는 회사의 본사에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하는 기타의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③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제기한 자는 그 뜻을 의사록에 기재할 수 있다.

제16조 【간사】 ① 이사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비서실장이 되며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7월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부터 시행한다.

제3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4월부터 시행한다.